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행정실 운영세칙

제정 2007. 12. 31.

개정 2008. 11. 20.

2010. 4. 20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행정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위임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기획위원회) ① 연구 및 학술 활동의 기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.

② 연구기획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연구부학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학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,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 및 학술 활동의 기획에 관한 사항

2. 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국제협력위원회) 삭제

부칙(제79호, 2007.12.31.)

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11.20.)

이 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08호, 2010.4.20.)

이 시행세칙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